

우리나라, 92년 가입했지만 후속 조치 미흡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아시나요?

신동민 | 미디어 다음 기자
media_dongmin@hanmail.net

UN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가입했으나 여전히 등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동 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장애아동도 존엄성이 보장되며 자립을 촉진하고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동의를 거쳐 UN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아동 협약 · Conventionon the Right of the Child)에 가입했다.

UN 아동협약, 가입은 했지만...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한 개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져야 하며, UN현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 존엄, 관용,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이는 아동협약 전문 중 일부다. 아동협약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폭 넓게 규정하고 있다.

‘가족의 달’이었던 5월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어린이, 부모님, 선생님 모두 서로를 챙기느라 바빴다. 그 와중에 학대당한 어린이, 방치되는 어린이, 버려지는 어린이에 대한 소식이 유난히 많았다.

사실 우리나라는 ‘어린이 인권 후진국’이다. 4년에 한번 UN의 전세계 아동의 인권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개선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곤한다. 상황이 이렇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1991년 11월 국회의

아동의 안전, 법적 보호,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 상해 금지 등 기본적인 내용은 물론 표현의 자유도 보장하고 있다.

아동 표현의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모를 비롯한 어른에 의해 아동의 의견이 수시로 묵살되는 것이 일상화된 우리나라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여겨지는 대목이다.

아동 협약은 또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역시 보장하고 있으며 함부로 아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아동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과도한 사교육에 지친 아동들이 동네 공원에 모여 “우리는 뛰어 놀고 싶다”며 시위를 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련 단체에서도 가입 여부 몰라

장애 아동에 대한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있는 생활을 누려야 하는 것은 물론 장애 아동이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

그러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년동안 집안에 감금되어 아이들이 적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

성추행 사건과 같은 형사 사건 처리에 있어서 아동이 우선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성추행을 당한 아동의 비디오 진술도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13년 전에 아동 협약에 가입했지만, 아동을 둔 부모, 교육자들도 이런 협약이 있는 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정부의 관계 부서에서도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가입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도사회복지대 유성종 총장은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학교 관계자들도,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문화부 산하 단체에서도 협약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고서도 등한시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